

예산총칙

2023년도 추가경정 제1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2,357,125,081	70,713,752
일반회계	2,003,048,950	60,091,469
특별회계	354,076,131	10,622,284
공기업특별회계	168,204,339	5,046,130
상수도사업	69,766,227	2,092,987
하수도사업	98,438,112	2,953,143
기타특별회계	185,871,792	5,576,154
공유재산관리	79,452,085	2,383,563
의료급여기금	10,509,712	315,29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16,969	509
교통사업	47,107,732	1,413,232
철도건설사업	30,915,788	927,474
폐기물처리시설	139,200	4,176
도시재정비촉진	1,376,501	41,295
도시개발	270,000	8,100
공공시설등 설치	301,181	9,035
문화시설건립	919,590	27,588
도시재생	14,827,769	444,833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35,265	1,05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2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2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961,638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15,205,359천원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3) 내부유보금 756,279천원

제 7 조 202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7,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